

제 1643 호
1992. 3. 23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
편집인: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731-6111~3
인 쇄: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273-8111~3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2889 호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3
- 제 2890 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 제 2891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 제 2892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 제 2893 호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 제 2894 호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4
- 제 2895 호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5
- 제 2896 호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6
- 제 2897 호 서울특별시물가안정기금의적립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 6
- 제 2898 호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용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 6
- 제 2899 호 서울특별시유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 6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발길은 일터로 눈길은 세계로”

제 2900 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7
제 2901 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	8
제 2902 호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2903 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제 2904 호	서울특별시중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	9
제 290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중개정조례	9
제 2906 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10
제 2907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0
제 2908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10

● 규 칙

제 2457 호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11
----------	--------------------------	----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889호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하고 제1항제4호나목 중 “시민생활국”을 “창소사업본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890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

처”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891호

서울특별시의회원보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원보수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 ①의원이 회기중 회의의 휴회(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참석여비 및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제7조(회의참석여비 등) ①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1의 현지고분비 전액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관내출장여비 또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내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

1. 1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 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89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정과”를 “의정담당관”으로, “의사과”를 “의사담당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무처장 밑에 공보실을 두며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보실) 공보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 3. 출입기자 및 보도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명 및 본문 중 “의정과”를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의전 및 홍보”를 “의전”으로 하며, 동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명 및 본문 중 “의사과”를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관련 (별표)의 일반직 4급 정원란 “13”을 “14”로 하고, 동 정원 내용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10”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11”로 한다.

일반직 5급 정원란 “9”를 “12”로 하고, 동 정원 내용 중 “지방행정사무관 8”을 “지방행정사무관 11”로 한다.

일반직 6급 정원란 “15”를 “17”로 하고, 동 정원내용 중 “지방행정주사 13”을 “지방행정주사 15”로 한다.

일반직 7급 정원란 “24”를 “26”으로 하고, 동 정원내용 중 “지방행정주사보 22”를 “지방행정주사보 24”로 하며, 일반직 소계란 “68”을 “76”으로 한다.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주부) 18”을 삭제하고, “지방사무보조원(필기) 4” 및 “지방위생원(사역) 4”를 신설하며, “지방사무보조원(타자) 8”을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8”로 하고, 총계란 “144”를 “15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893호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학”을 “대학교”로 하고, 제9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894호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

<p>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6조 중 "제12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일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p>	<p>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별지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전화번호)

시행일자 :

수 신 : 서울특별시장

발신 : 구청장 (원)

제 목 : 의료보호기금보조신청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신 청	지 원	보 조 금	대 불 금
금 액	내 역		
산 출			
기 초			
대 불 금			
상 환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

●서울특별시조례제2895호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건설관리국장"을 "주

태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물가지도등당관"을 "상공
 사장 또는 농축과장"으로 하고 "소비자보
 호계장"을 "상정계장 또는 농수산물 유통
 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

●서울특별시조례제2896호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소매점에 한한다)의 개설
 허가"를 "빛 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센터의 개설허가 또는 매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중설허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3인"을 "15인 이내"로 하
 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건설관리국장"
 을 "주택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2인"을, 제3호 중 "2인"을, 제4호 중 "3
 인"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4호의 "관
 련업체 대표"를 "관련업체 단체대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련업체 단체대표는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도·소매업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불가안정기금의적립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

●서울특별시조례제2897호

서울특별시불가안정기금의적립과관리
에
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불가안정기금의적립과관리에관
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합구판장용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

●서울특별시조례제2898호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용자금지급
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종합구판장용자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

●서울특별시조례제2899호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00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의 방법,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동물의 보호 등) ①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동물원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각대금은 해당구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④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호시설)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보호 관리인)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동물보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의사 또는 동물애호단체의 회원
2.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제5조(임무) 관리인은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보호동물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사육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해축) 구청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축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탁보호) ①구청장은 관리인을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등에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임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한다.

제9조(소요경비 지급) ①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의 노임, 관리인의 수당, 공수의의 진료비, 위탁보호 수수료 등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소요경비의 징수) ①구청장은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 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요경비 산출기준표(제9조 및 제10조제1항 관련)

1. 사료급여 기준

동 물 명	규 격	사 료 급 여 량 (1마리/1일)
개	10kg 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10kg 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비고: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 하도록 한다.

2. 관리에 대한 수당

정부노임 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

정부노임 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4. 포획인부의 노임

정부노임 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5. 치료비

수의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6. 수송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인가한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표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킨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901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킨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문화예술킨흥기금조성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화담당관”을 “문화관광국 문화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902호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00억원”을 “250억”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시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무총리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부칙 제2항제2호 중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의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인가)받아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03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관리국장”을 “도로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04호

서울특별시중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중기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05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한다.

제1조 중 “지하철도”를 “도시철도”로 하고,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하며, “지하철공채”를 “도시철도공채”로 한다.

제2조 중 “지하철공채”를 “도시철도공채”로 하고,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하철공채”를 “도시철도공채”로 하고,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하며,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하고, “지하철도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지하철공채”를 “도시철도공채”로 하고,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중 “지하철공채”를 “도시철도공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동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906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동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동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강관리사업소장”을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징수교부금) ①구청장이 점용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경비로 해당 구에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율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907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수료의 기준) 수수료는 다음 산정 기준에 의한다.

1. 수수료는 매립면허시를 기준으로 매립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가액에 1,000분의 15을 곱하여 산정한다. 매립지가액은 매립할 공유수면의 인접한 토지의 시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시가는 매립면허일 현재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토지의 과세시가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 비과세토지인 경우 비과세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동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908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동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동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징수교부금) ①구청장이 점용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율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2. 3. 23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㉑

●서울특별시규칙제2457호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의
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
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신
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